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136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3. 2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2. 9. 13. 접수 제199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2022. 5. 17. 원고와 C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22년 제24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위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C에게 2021. 12. 31. 3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1) 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8.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2. 9. 13. 접수 제199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2022. 10. 27. 전주지방법원 2022개회9337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공정증서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2022. 7. 26. 20,000,000원, 2022. 8. 26. 20,000,000원을 C에게 빌려주었으나 C가 즉시 갚겠다는 약속과 달리 즉시 원금을 갚기는 어렵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안감을 표현하자 C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다만 C가 차후에 추가로 돈을 빌릴 가능성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200,000,000원으로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설정 후에도 3회에 걸쳐 39,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7. 26.부터 2022. 10. 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9,000,000원을 C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2022. 7. 26.과 2022. 8. 26. C에게 대여한 합계 40,000,000원을 C가 기존 약속과 달리 즉시 변제하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철환

별지